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. 7. 10 선고 2024가단733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7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순번 가, 나, 다 라, 마, 바,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60㎡를 인도하고,
나. 340만 원 및 2024. 4. 19.부터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

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간이설시의 근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 양시호

별지